

## 제9장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 제 1 절 유가증권의 분류

- 지분증권·채무증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또는 장기적 자금운용 및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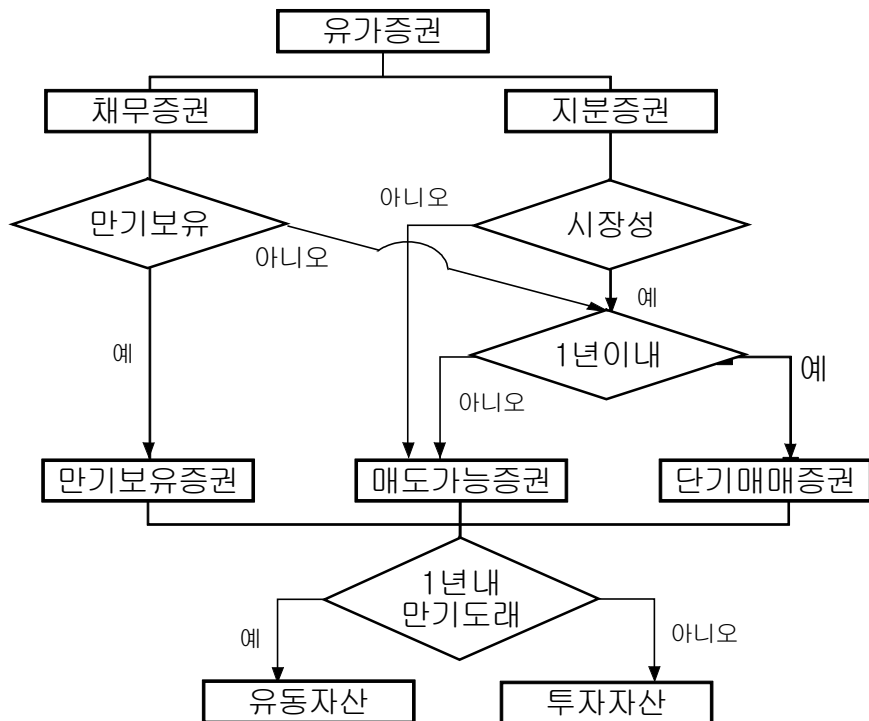
#### 1. 형태에 따른 분류

- 지분증권(주식형) : 주식, 신주인수권 등
- 채무증권(부채형) : 국채, 공채, 사채 등

### 제 2 절 투자대상으로서의 유가증권

#### 1.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분류

- 단기 매매차익 획득 목적 ⇒ 단기매매증권 (유동자산)
- 만기보유 목적의 채무증권 ⇒ 만기보유증권
- 기타 ⇒ 매도가능증권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 유가증권의 분류



## 2.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

### (1) 취 득

- 유가증권의 취득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로 기록
- 취득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매입수수료, 이전비용, 등록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2) 보유에 따른 수익

-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배당금수익이나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여 손익 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보고한다.

## 3. 유가증권의 평가

### (1)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 시가(유가증권 평가일의 종가)로 평가  
⇒ 미실현보유손익을 인식함

- 역사적 원가주의는 자산이나 부채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되어 온 원칙이지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증권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시가로 평가한다.

###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또는 평가직전 장부가액)와 공정가액과의 차이 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의 손익에 포함
- 「공정가액 > 취득원가(또는 평가직전 장부가액)」이면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I/S상 영업외수익) &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 (B/S)을 증가시킴

[결산일에 평가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차) 단기매매증권      xxx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xxx

- 「공정가액 < 취득원가(또는 평가직전 장부가액)」이면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I/S상 영업외비용) &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 (B/S)을 감소시킴

[결산일에 평가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차) 단기매매평가손실      xxx                              (대) 단기매매증권      xxx

(2) 투자지분증권의 평가

구분	평가원칙		
투자 지분 증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가능한 경우(지분법투자주식)		지분법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불가능 (매도가능증권)	시장성이 있는 경우	시가법
		시장성이 없는 경우	원가법
투자 채무 증권	만기보유목적의 경우(만기보유증권)		원가법
	만기보유목적 이외의 경우(매도가능증권)		시가법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

▶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 또는 공신력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원가법 (cost method)

-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취득 후에도 취득원가로 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현금 xxx
- 피투자회사에서 순이익(순손실) 보고시 - 분개 없음
- 배당금 수취시 배당금수익으로 처리(영업외수익)  
(차) 현금 xxx (대) 배당수익 xxx
- 처분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취득원가)와 비교
  - 처분가액 >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영업외수익)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xxx
  - 처분가액 <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영업외비용)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xxx

■ 시가법 (market value method)

-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취득 후에도 취득원가로 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현금 xxx
- 피투자회사에서 순이익(순손실) 보고서 - 분개 없음
- 배당금 수취시 배당금수익으로 처리  
(차) 현금 xxx (대) 배당수익 xxx
- 평가
  - 취득원가(또는 평가직전 장부가액)와 시가(공정가액)간의 차이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
  - 공정가액 > 취득원가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B/S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장부가액을 증가시킴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 공정가액 < 취득원가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B/S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장부가액을 감소시킴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 처분시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시가평가±평가손익)와 비교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상계하여 처리
  - 처분가액 >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영업외수익)

[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xxx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매도가능증권처  
 분이익 xxx

- 처분가액 <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영업외비용)

[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xxx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 지분법 (equity method)

- 특정회사(투자회사)가 타회사(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타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
- 피투자회사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피투자회사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보고서를 작성

-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취득 후에도 취득원가로 평가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xx (대) 현금 xxx

-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변동을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에 반영
- 피투자회사에서 순이익(순손실) 보고시 지분율 만큼 가감하여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증가(감소)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배당정책을 조정함으로써 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순이익보고시 회계처리]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대) 지분법평가이익  
×××

[순손실보고시 회계처리]

(차) 지분법평가손실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배당금 수령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감소
  - (차) 현 금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처분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 비교
  - 처분가액 > 장부가액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영업외수익)
    - (차) 현 금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 처분가액 < 장부가액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손실(영업외비용)
  - (차) 현 금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